

2019년도 제10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7. 4.(목요일), 10: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최승수 위원(분과위원장), 강호갑 위원, 정태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0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건(안건번호 제2019-62353호~64618호)
 - 회의결과 :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0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0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전차 회의록 5쪽에 복제·전송자 아이디, 9쪽에 사이트명, 10쪽에 웹호스팅서비스명, 12쪽과 14쪽에 사이트명이 있어 비실명처리 후 공개하는 의견을 제시함
- A 위원 :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며, 아이디와 사이트명은 비실명 처리 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C 위원 : 비실명으로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복제·전송자 아이디 및 사이트명은 비실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62353호~64618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4,285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이 연주한 클래식 음악으로 현재 불법복제물이 전송 중임을 확인할 수 있음
안전번호 제2019-62353호, 62355호는 심의시점 기준으로 이미 삭제된 게시물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해보임
(민원인이 제출한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19-62356호는 배타적발행권자라고 주장하는 법인이 신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출판물명은 ‘□□□ □□’ 이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음
 - 정현순 전문위원 : 방금 보여준 안전번호 제2019-62354호의 게시물 화면에서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달라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데, 이용자들이 알아서 이메일을 댓글에 남기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보호원이 심의대상 게시물을 채증할 당시에는 이메일을 남기면 음원을 보내준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게시자가 게시물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안전번호 제2019-62353호~62355호 게시물의 게시자는 동일인임
 - 정현순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와 게시물의 현재 상태를 비교해보니 두 번째 문단이 삭제되어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62353호, 62355호 게시물은 이미 삭제되어 있음
- B 위원 : 민원인이 게시자에게 연락을 해서 게시자가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함
- A 위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심의시점에 이미 삭제된 안전은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92353호, 92355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안전번호 제2019-92354호, 9235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62357호~64618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 컴퓨터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 A 위원 : 단순 불법복제물이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62357~64618호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19-62353호~64618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10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0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7. 11.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호갑

위원 정태호